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강 현 철 · 차 현 속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입법평가 연구 12-24-⑱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

강현철 · 차현숙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

The Legislation Evaluation on Tourism Development Law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

Kang, Hyun-Cheol

차현숙(부연구위원)

Cha, Hyun-Sook

2012.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관광진흥법에 관한 체계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필요성 대두
 - 관광산업의 대중화와 입법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혼란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 관광법 체계구성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음
 - 입법대응의 즉흥성으로 관광진흥 전반에 관한 입법체계의 규범성에 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범체계성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자 함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른 관광진흥법 평가 및 분석

II. 주요 내용

- 입법평가 방법론
 - 규범적 평가
 - 목표달성도와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평가
 - 제·개정 이후의 입법목적의 달성정도에 관한 분석
 - 단일법에 사업·진흥 등 규범체계성에 대한 적절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

○ 관광 현황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실태조사와 현황 등 통계분석

- 관광 관련 법제의 현황 분석

□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비교법적 평가

○ 효과성 및 수용성 평가

Ⅲ. 기대효과

□ 관광진흥법의 입법대안 제시로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규범대응성의 강화

□ 입법평가 방법론 중 규범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기준제시 및 활용

▶▶ 주제어 :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제도화, 입법이론, 입법학, 관광진흥, 관광진흥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rise of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nd normative analysis on Tourism Development Law
 - The ris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tourism law to embrace confusion and acceptance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tourism industry and the diversification of legislative system
 - This study, in terms of the norm system, seeks to evaluate the related content because of the request of the review on the norms of legislative system on the overall tourism promotion due to the instant legislative response.
- Research scope and methods
 - Theoretical research : Evaluation and analysis of Tourism Development Law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ology

II . Main Content

-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ology
 - Normative evaluation

- The evaluation centered on the goal achievement and the normative systemicity
- The analysis on the degree of the legislative goal achievement since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ourism Development Law
- The analysis and evaluation centered on the adequacy on the normative systemicity of the stipulation of business and promotion, etc. in single law
- Analysis on the current tourism and legal system
 - Statistical analysis on the survey and current status, etc.
 - Analysis on the current tourism-related legal system
- Legislation evaluation
 - Normative evaluation
 - Comparative legal evaluation
 - Effectiveness and acceptance evaluation

III. Expected Effects

- The systematiza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legislative alternative of Tourism Development Law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normative responsiveness

The present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riteria on the normative evaluation methodology of legislation evaluation methodologies

➤ Key Words :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evaluation, legislation theory, nomology, tourism promotion, Tourism Development Law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11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제 2 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12
제 3 절 입법평가의 대상	13
제 4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13
I. 규범론적 평가	14
II.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15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17
제 1 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17
I. 일반현황	17
II.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 관광자원 관련 현황	18
III. 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21
제 2 절 관광 관련 법제 개관	31
I. 관광진흥법 개관	31
II. 관광기본법 개관	44
제 3 장 관광진흥법 규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49
제 1 절 관광관련 사업의 발전과 관광진흥법 체계의 부조화	49

I. 연혁적 관점	49
II. 관광기본법과의 관계	53
제 2 절 진흥법인가 규제법인가	54
I. 서	54
II. 이분법안	55
III. 삼분법안	59
IV. 개별 분법안	60
제 3 절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규정	65
제 4 절 위임입법의 정비	67
I. 서	67
II. 관광사업의 종류(법 제3조)	71
III. 규제체계의 정비	74
IV. 등록규제에 관한 사항	79
V. 허가와 신고규제	81
제 5 절 개발계획법제의 정비	85
참 고 문 헌	91

【부 록】

부록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95
부록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105
부록3 카지노업 영업 준칙	113
부록4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135
부록5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	139

제 1 장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관광이라 함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관광이라는 문자는 중국 주(周)나라 시대의 <<역경(易經)>>에 “관국지광, 리용빈우왕(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이라 하여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말은 타국의 광화(光華)를 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순회 여행하는 이동의 개념과, 타국을 순방하여 그 나라의 토지·풍속·제도·문물의 관찰을 행하는 견문의 확대 및 치국대도의 설계라는 국가 행정목적의 3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용어로서의 관광의 개념은 유럽에서 건너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을 투어리스트(tourist)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유여행(周遊旅行), 즉 ‘투어(tour)’를 한다는 뜻으로, 정주지(定住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¹⁾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주40시간(5일제)근무제의 확대 실시 및 학생들의 주 5일 수업제의 정착과 더불어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 생활관광 시대’를 선포하는 등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2010) 등 9

1)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사전), 관광, 2012년 7월 28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4278&categoryId=200000350> 참조.

건이 문화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1건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자연관광 및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더없이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서 무역외수지의 하나를 이루며 외국과의 문화교류나 국제친선에 큰 도움이 된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증진이나 교양의 향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지역격차의 시정을 꾀할 수 있다. 세계 각국도 이와 같이 관광이 지니는 경제적·문화적 의의를 인식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국책으로서 진흥에 나서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이 큰 분야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에 대하여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 「관광진흥법」을 대상으로 그 규범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외를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주변 환경에 입법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재 기본법과 개발기금법 및 공사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광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은 사업·진흥·기금·개발 등을 포함한 전체 7장으로 구성된 관광에 관한 종합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각 단위별 규율내용을 하나의 법전에 담고 있어서 각 단위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규범체계성

의 관점에서 현행 법률을 입법평가하여 그 적정성과 효용성을 판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과제는 먼저 ① 규제와 행정목적간의 균형성 체크, ② 관련 법령간의 체계성 검토, ③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한 대안 마련, ④ 수용성 검토, ⑤ 실효성검토 등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충실한 검토·분석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도입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구비용과 연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제 3 절 입법평가의 대상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령은 현행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규범체계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한 체계성 검토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관광기본법」,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검토하여 수직적 체계성 및 수평적 체계성을 함께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4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관광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심사기준이 선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도, 수용성,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규범론적 평가를 진행하기

로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수용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기로 한다.

I. 규범론적 평가

규범론적 평가는 크게 목표달성도 심사와 규범체계성 분석이 그 내용을 이룬다. 먼저 목표달성도 심사는 특히 입법의 목적이 현재에 달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범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광진흥과 관련된 법령의 입법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목표달성도를 심사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종종 법률에는 일반적인 상위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타목표와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목표와 조치들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유용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특정 법률의 상위목표를 목표달성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① 특정 법률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② 그 법률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 ③ 어떠한 하위목표, 부수목표 등이 추구되는가, ④ 목표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⑤ 목표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조치들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⑥ 주목표, 기타 목표 및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들 간의 추측된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²⁾

규범론적 평가는 먼저 현행 「관광진흥법」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³⁾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2007), 187면.

3) 규범론적 평가의 중요한 방법으로 적용되는 체계성 분석은 법규범의 내부적인 구조 및 법적인 논증의 실제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해가능성의 검토는 용어의 개념적인 명확성과 언어적인 분명함을 높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해가능성의 검토는 법규범들이 이해가능한지와 준수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법규범의 본질적인 의미 내용은 규범 수범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법규정은 규범 수범자에게 이해가능 하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앞의 책, 107면.

법안들도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관광진흥법」의 입법대안의 하나로서 입법평가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관광진흥법」과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 검토를 수행한다.

II.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위하여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을 활용한다. 「관광진흥법」 관련 전문가 그룹, 즉 관련 공무원 및 산학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문제 및 쟁점 등을 확인하고, 연구범위 및 대상 등을 확정하는데 대한 도움을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제 1 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I. 일반현황

1. 국토 현황

(1) 지리적 여건

아시아 대륙 동북부에 위치하는 길이 약 1,000km의 반도국가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인접한 환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 약 22.3만km²으로서 이중 남한은 45%인 9.96만km²이다. 국민 1인당 국토 면적은 약 2.3천m²으로 미국(38.9천m²), 일본(3.0천m²), 영국(4.3천m²), 프랑스(12.6천m²), 등 주요 선진국과 전 세계(25.8천m²)와 아시아(8.9천m²)의 평균보다 협소하다.

(2) 지형

평균고도는 482m로 유럽(345m), 오세아니아(340m)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여타 대륙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국토의 65% 이상이 산지이고 동쪽으로 치우친 산맥(백두대간)을 근간으로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이며, 남해 쪽은 완만한 지형이다. 동해안은 용기해안으로 수심이 깊고 단조로우며, 서해안은 리아스식 침강해안으로 간척지와 대륙붕, 사호, 사주 등이 발달하여 해안매립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다.

2. 인구 및 경제·사회전망

2009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29%이나 2018년에 이르면 0.02%까지 하락하여 2019년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5.6%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동의 증가로 경제실질성장률은 4~5% 수준이며, 1인당 실질 GDP는 매년 4%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3,628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 등 환경 문제를 심화시켰으나, 향후의 환경오염 추세는 녹색성장 및 지구 온난화의 화두로 인한 경각심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수준의 증가로 환경의 질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국민의식과 성장 패러다임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산업구조의 재편도 더욱 가속화되어 제1차 산업의 감소와 제2·3차 산업의 증가가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 소비형태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 관광자원 관련 현황

관광자원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나 관광의 욕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인 관광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까지는 관광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원도 대중관광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매력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 반면 관광매력을 상실해가는 자원도 있다.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그것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제성을 띠고 있는 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관광자원 중 특히 자연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은 자연적 파괴나 인위적 파손·훼손을 입기 쉬운 것이 많다. 그러므로 관광자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67년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원법이 제정·공포되고 그 후의 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문화재보호법 등에서 관광자원의 보호와 보존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 현장’이 선포되어 관·민 양 부문에 걸친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2월, 전 세계적 운동인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호응하여 제정한 자연환경보전법은 비록 관광진흥이 직접적 목적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가 보전됨으로써 관광에 기여하는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관광자원에는 있는 그대로의 관광자원, 즉 인공적인 손을 대지 않고서도 자연 그대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관광자원과 인공적인 수단의 투입에 의하여 다듬어 만들어진 관광자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개발이라는 인공수단을 가함으로써 비로소 관광대상이 된다.⁴⁾

한편 관광자원은 자연 관광자원과 인문 관광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자연 관광자원에는 산악·구릉·해양·도서·하천·호소·산림·수목·화초·동물·온천 등이 포함되며 인문 관광자원에는 문화적·사회적 자원으로서 건조물·사적·예술품·민속·문화적 시설·관광시설·유무형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국의 산업수준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식시켜 타국과의 경제·무역 및 기술교류에 직접·간접으로 기여시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이 발달함에 따라 공장·산업시설들이 산업관광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포항·울산 등). 이 밖에도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각종 공해의 만연, 사회 관광의 보급으로 대규모 관광 레크리에이션 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레크리에이션 자원 등이 있다.⁵⁾

4) 네이버 백과사전, 관광자원,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339&mobile&categoryId=200000350> (2012년 9월 8일 검색) 참조.

5) 네이버 백과사전, 관광자원,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339&mobile&categoryId=200000350> (2012년 9월 8일 검색) 참조.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1967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이후부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2011년 현재 총 20개의 공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공원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려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 변산반도의 3개소는 해상/해안공원, 경주국립공원은 사적공원이며, 나머지 16개소는 명산들로 이루어진 산악형 공원이다.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6,580.884 km²이며, 이 중 육지는 58.1%에 해당하는 3,827.175 km²이며 해면은 전체면적의 41.8%에 해당하는 2,753.709 km²이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9개소를 관리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⁷⁾

또 다른 주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인 문화재의 경우 연도별 국가지정 문화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국보 314건, 보물 1,710건, 사적 479건, 명승 82건, 천연기념물 422건, 중요무형문화재 114건을 포함하여 총 3,385건으로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현황⁸⁾>

- 6) 국립공원 기본현황 통계자료(2011.1.10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main.knps.or.kr> 참조.
- 7)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지정 이후 경주시에서 관리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 8)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seek/search/statistics-02.jsp?mc=NS_03_06

Ⅲ. 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1. 관광지 지정 현황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관광지 지정 현황은 부산 5개소, 인천 2개소, 경기 14개소 등 230여 곳이다. 자세한 지정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관광지 지정현황⁹⁾>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용호씨사이드, 기장도예촌
인 천	2	서포리, 마니산
경 기	14(1)	대성, 용문산, 소요산, 신륵사, 산장, 한탄강, 산정호수, 공릉,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덕포진
강 원	42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화천온천,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아우라지, 유현문화, 석교온천, 동해 추암, 영월 마차탄광촌, 평창 미탄마하 생태, 속초 척산온천
충 북	23(1)	천동, 다리안,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 능강, 금월봉, 속리산레저, 계산, 괴강, 제천온천,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 구병산, 늘머니과일랜드

(2012년 9월 13일 검색) 참조.

9)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http://www.mcst.go.kr/web/dataCourt/statisticsData/statisticsView.jsp> 참조 (2012년 9월 3일 검색).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충 남	25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삼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마곡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립온천, 천안종합휴양,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간월도, 난지도, 왜목마을, 남당, 서동요역사
전 북	24(5)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마이산회봉, 모악산, 내장산리조트, 김제온천, 상송온천, 지리산남원약수온천 , 옹포, 모항, 왕궁보석테마, 용담송풍, 백제가요정읍사 , 미륵사지, 오수의견, 변산해수욕장 , 벽골제
전 남	27(2)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립사, 대광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 대구도요지, 불갑사,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 회산연꽃방죽, 홍길동테마파크, 아리랑마을, 정남진 우산도-장재도 , 신지명사십리, 해신장보고, 운주사, 영암 바둑테마파크
경 북	29(1)	백암온천, 성류굴, 경산온천,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울릉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청도온천, 치산, 도산온천, 용암온천, 탑산온천, 문경온천, 순흥, 호미곶, 풍기온천, 예천온천, 용유계곡 , 선바위, 상리, 하회, 다덕약수, 다산, 포리, 풍기 창락, 청송 주왕산
경 남	22(3)	부곡온천, 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송산, 마금산온천,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송정, 벽계, 장목,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사동, 하동 목계(청학동), 사천 비토
제 주	17	돈내코, 용머리,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봉개휴양림, 토산, 묘산봉, 미천굴, 오라, 수망, 표선, 세화·송당온천, 금악, 제주돌문화공원, 곱지
합 계	230(13)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관광지

2. 관광단지 현황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관광단지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¹⁰⁾와 같다.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보 문 (79.7/ 08.3)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1973- 2010	8.006	9,709	경북관광 개발공사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신라촌, 상가, 놀이 시설, 청소 년 수련 시 설 등	- 숙박, 골프장, 상 가, 분수 등 운영 - '06까지 투자비 : 8,234억원 - '07실적 : 소형호 텔, 승마장, 산 책로보강 등 784 억원 - '08투자계획 : 소 형호텔, 승마장, 상가, 연수시설 등 195억원 - '09이후계획 : 496 억원
중 문 (71.5/ 78.6)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1978- 2010	3.562	18,137	한국관광 공 사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해양수 족관, 식물 원, 상가, 야 외공연장, 놀이시설 등	- 관광센터, 숙박 시설, 골프장, 관 광식물원, 해양센 터 등 운영중 - '07까지 투자비 : 10,325억원 - 1단계(중부) : 호 텔(1,323실)콘도 (216실)관광식물 원, 해양센터 등 운영 중

10)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http://www.mcst.go.kr/web/dataCourt/statisticsData/statisticsView.jsp> 참조(2012년 9월 3일 검색).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 2단계(동부)컨벤션센터, 평화센터 운영, 앵커호텔·콘도공사 중 - 향후계획 : 콘도, 증문랜드, 관광호텔 등 공사 추진 준비중
해 남 화 원 (92.10/ 94.6)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1991- 2011	5.084	10,631	한국관광 공 사	관 광 호 텔, 콘도, 골프 장, 마리나, 해수욕장, 해 양 문 화 센타, 휴양 병원 등	- 도로등 기반조성 공사중 - '06까지 투자비 : 1,350억원 - '07:기반조성, 편 익시설, 골프장 등 624억원 - '08:조경등 기반 시설 498억
화 양 (03.10.30/ 06.05.04)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동리, 안포리	2004- 2015	9.989	15,031	주식회사 일 상	호텔, 스포 츠타운, 골 프장, 테마 파크, 화훼 원 오션파크	- 부지 매입, 용역 실시 등 - '06년까지 투자비 : 638억원 - '07: 토지보상, 용 역, 골프장 착공 등 626억 - '08.4월 단지조성 공사착공
감 포 ('93.12/ 05.1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1997- 2015	3.975	8,500	경북관광 개발공사	관 광 호 텔, 콘도, 골프 장, 오션랜 드, 레포츠 랜드, 노인 휴양촌, 청 소 년 수 련	- 골프장 운영중 - '06까지 투자비 : 968억원 - '07실적 : 토지매 입, 기반공사, 문 화재지표, 시굴 조사 177억원

제 1 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시설, 수목 원 등	- '08투자계획 : 토 지매입, 기반공사 등 215억원 - '09이후계획 : 7,140 억원
원 주 오크밸리 (95.3/ 96.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995- 2013	11.300	11,525	한솔개발 주식회사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스키장, 미술관, 청 소년수련 시설, 생태 관광지등	- 콘도, 골프장, 스 키장 운영, 회원 제 골프장 증설, 미술관·박물관 실축 - '07까지 투자비 : 8,224억원 - '08: 미술관, 박물 관, 전망휴게소, 콘도 등 788억원
김 천 온 천 (96.3/ 97.12)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997- 2011	1.424	5,357	주식회사 우촌개발	관광호텔, 콘도, 온천 장, 스포츠 센터, 승마 장, 노인휴 양촌, 연수 원등	- 기반조성 및 온 천장공사 - '05까지 투자비 : 357억원 ※ IMF 부도이후 장기부진 - 외자유치를 위하 여 노력 중이나 담보상태
휘닉스 파크 (98.10/ 99.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1994- 2016	3.995	9,514	(주)보광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스키장, 체육관 빙상 장, 상가등	- 숙박시설, 골프장 (18, 6홀), 스키장 워터파크 운영중 - 기 투자(~'09): 7,410억원 - '10~'16 투자계획 : 가족호텔, 콘도, 상가, 스키장등 2,105억원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마리나, 카지노, 상 가등	- '06.9: 실시계획승 인(1단계:1.29km ²) - '08.6: 1단계지역 보상추진 (3,500억원 규모) - '08.12 개발계획 수립예정 (2 단계: 1 단 계 포함21.65km ²) - '08.12 SPC 설립 예정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986- 2015	16.367	14,385	(주)용평 리조트	관광호텔, 콘도, 골프 장, 스키장, 빙상장, 워 터파크, 테 마파크등	호텔, 콘도, 골프 장, 스키장, 빙상 장 운영 - '07까지 투자비: 10,860억원 - '08: 4차콘도 224 실, 5차콘도 106 실, 워터파크등 1,295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 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호텔, 콘도, 공예촌, 골 프장, 놀이 공원 등	- '07실적 : 부지매 입완료 등 304억원 - '08투자계획 : 354 억원 기반조성 및 공공건축물 공사 - '09이후계획 : 2,511 억원 공공건축물 공사 및 민자시설
동부산 (05.3/ 06.3)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2000- 2011	3.638	8,812	부산도시 공 사	호텔, 콘도, 복합상가, 골프장, 테 마파크, 녹 지시설 등	- '06.6 진입도로 1 단계 공사 준공 - '07: 토지보상, 진입도로 2단계 공사 준공

제 1 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 '07까지 투자비 : 3,075억원 - '08:사업자선정, 토지보상완료, 이주단지조성, 부지조성공사 ('08예산2,604억원)
횡성 두원 (05.6/ 수립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1992- 2011	4.251	5,008	현대 시멘트 (주)	콘도, 호텔, 골프장, 스 키장, 식물 원, 공연시 설 등	- 콘도, 스키장, 체 육시설 운영중 - '07까지 투자비: 3,951억원 - '08: 관광호텔, 페 어웨이빌라 콘도 공사 등 175억원
알펜시아 (05. 9/ 2006.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2004- 2008	4.930	13,538	강원도 개발공사	호텔, 콘도, 엔터테인 파크, 골프 장, 스포츠 파크, 워터 파크, 컨퍼 런스센터, 동계스포 츠 지구 등	- '06.8.17 사업 착 공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공사중 - 바이애슬론경기 장 준공('07.12) - '07년까지 투자 비 : 9,266억원 - '08년 : 골프장, 스 키장 등 1,979억원
광주 어등산 (06.1.31/ '07.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005- 2015	2.732	3,400	광주 광역시 도시공사	빛과예술 센터, 테마 파크, 골프 장, 관광호 텔, 콘도미 니엄 등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 료, 토지보상중, '08.9 사업착공 예정 - '06까지 투자비 : 150억 - '07: 토지보상, 기 반조성 등 220억 - '08 투자계획 : 1,512억원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성산포 해양관광 단지 (’06.1.12/ ’06.1.1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2006- 2011	0.653	3,870	(주)보광 제주	호텔, 콘도 미니엄, 웰 컴센터, 전 시관, 해중 전망대, 해 양구제공 원, 해수스 파랜드, 엔 터테인먼 트 센터 등	- ’06.01.12 개발사 업 승인 - ’06.9.12 사업 착공 - ’08.06 1단계 사 업완료 - ’08.07 2단계 개 발계획 수립 중
송 도 (’08.3.31/ 수립 예정)	인천 연수수 동춘동, 옥련동, 학익동 일원	2008-	2.113	미정	인천관광 공사+ 지주SPC (예정)	미정	- ’08.3.31 관광단지 지정 - ’08. 12. spc설립 예정
홍천 비발디 파크 (08.11.18/ 수립 예정)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1990- 2011	5.468	11,300	(주)대명 레저산업	콘도 미니 엄, 관광호 텔, 스키장, 골프장, 다 목적 운동 장, 정구장, 양궁장, 호 수공원, 유 원시설	- ’08.11.18 관광단 지 지정
신화역사 공원 (’06.12/ ’06.12)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	2006- 2014	4.043	15,945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테마호텔, 비즈니스 호텔, 타임 스퀘어, 원 형극장, 테 마파크, 승 마장, 워터 파크 등	- ’06.11 미국GHL 사 MOA 체결 - ’07.12 말레이시 아 버자야사 MOA 체결 - ’07.12 부지조성 공사 착공 - ’09년내 합작법 인 설립 및 기본, 실시설계 착수

제 1 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팜파스 종합휴양 (’09.1/ ’09.1)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3196-2번지 일원	2008- 2018	3.000	8,775	(주)남영 산업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테 마스트리 트몰, 웰빙 테마랜드, 승마클럽, 스파랜드 등	- ’08.12 개발사업 시행 승인 - ’09.년 기반시설 공사 추진
중문색달 온천 (’09.2/ ’09.2)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	2009- 2012	1.093	2,324	(주)21세기 컨설팅	관광호텔, 가족호텔, 세계온천 문화휴양 촌, 노인휴 양촌, 한방 병원 등	- ’05.6 개발사업에 정차 지정 - ’09.2 개발사업 시 행승인 - ’09년내 기반시설 공사 추진
무릉도원 (09.9/ 09.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	2009- 2014	4.985	5,985	(주)에이 엠엘앤디	한옥호텔, 세계풍물 거리, 힐링 &클리닉센 터, 명품아 울렛, 생태 공원 등	- ’09.9.23 관광단 지 지정 및 조 성계획 승인
평택호 (’09.10/ 수립 예정)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1982- 2015	2.743	6,663	미정	수족관, 워 터월드, 농 악마을, 평 택호예술 관, 수상레 포츠센터, 가족호텔, 승마장, 골 프장, 위그 션선착장 등	- ’09.10.7 관광단 지 지정고시 - 민간사업자 제안 관련 적합성여부 PIMAX 심사중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단지명 (지정/ 조성 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모 km ²	사업비 (억원)	개발 주체	주요도입 시설	추진현황
강동 (’09.11/ 수립 예정)	울산 북구 산하동, 무룡동, 정자동 일원	2007- 2012	1.358	26,000	미정	워터파크, 타워콘도, 스키돔, 테 마파크 등	- ’09.11.26 관광단 지 지정 - ’10.6 사업착수 예정
에버랜드 (’09.12/ 수립 예정)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일원	2009- 2014	6.461	11,344	삼성 에버랜드 (주)	테마파크, 워터파크, 모터파크, 박물관, 미 술관, 동물 원, 숙박시 설, 골프연 습장, 스키 장등	- ’09.12.21 관광단 지 지정고시 - 조성계획 수립중
마우나 오션 (’09.12/ ’09.12)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번지 일원	1994- 2011	3.919	6,379	마우 나오션 개발	골프장, 수 영장, 썰매 장, 화훼공 원, 노인휴 양소 등	- ’09.12.28 관광단 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여수경도 해양 (’09.12/ ’09.12)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1번지	2009- 2016	2.143	3,913	전남개발 공사	마리나, 골 프장, 골프 빌라, 씨푸 드센터, 호 텔 등	- ’09.12.31 관광단 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제주헬스 케어타운 (’10.1/ ’10.1)	서귀포시 동홍동 2032일원	2010- 2015	1.539	7,845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헬스케어 센터, 전문 병원, 명상 원, 힐링가 든 등	- ’10.1.6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 획 승인
신앤박 (’10.2/ 예정)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224번지	2010- 2013	1.645	3,400	신앤박 종합개발 (주)	골프장, 스 키장, 콘도, 커뮤니티 센터 등	- ’10.2.25 관광단 지 지정
합 계						29개소	

제 2 절 관광 관련 법제 개관

I. 관광진흥법 개관

1. 관광진흥법 연혁

관광진흥법은 1975년 12월 31일에 “관광산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광사업법을 그 기원하고 하고 있으며 관광을 영업으로 하는 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7년 7월1일 관광진흥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3910호로 전부개정, 제8장 제60조)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전면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전면개정 법률은 관광 사업에 관한 규제는 대폭 축소하고 진흥과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 및 통합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현재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관광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의 변천과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1986.12.31 (법률 제3910호, 전부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 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 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 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p>1993.12.27 (법률 제4645호, 일부개정)</p>	<p>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사업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을 사전에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미리 이를 신고하도록 함. - 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지역안의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p>갱신등록제도등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여행업등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이 3년 또는 5년마다 하여야 하는 갱신등록제를 폐지함. - 휴양콘도미니엄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전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만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한 법인과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p>1994. 8. 3 (법률 제4778호, 일부개정)</p>	<p>카지노업이 관광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여 온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새로이 규정하되 카지노</p>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p>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p>	
<p>2002. 1.26 (법률 제6633호, 일부개정)</p>	<p>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신설). -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 신설).
2004.10.16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p>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처분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의 승계원인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등록권한 이양(법 제4조)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관광사업 양수 등의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법 제8조 제3항 신설) :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p>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허가 신설(법 제29조의2 신설) -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의 실효(失效)제도 도입(법 제53조의2) - 관광특구지역안의 시설에 대한 지원(법 제68조의2 신설)
<p>2007. 7.19 (법률 제8531호, 일부개정)</p>	<p>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2008. 3.28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일반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에는 현행과 같이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의 일반적인 결격사유 외에 제22조의 결격사유도 적용되므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위 승계 시 제7조 및 제22조의 결격사유 모두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8. 6. 5 (법률 제9097호, 일부개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시험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09. 3.25 (법률 제9527호, 일부개정)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 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의 활성화(법 제12조의2 신설) :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여행계약의 구체화(법 제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p>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증거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법 제32조)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관광안내(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1)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3) 관광통역안내자격자가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광통계(법 제47조의2 신설) - 지역축제(법 제48조의2 신설)
2010. 3.17 (법률 제10112호, 일부개정)	<p>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p>	

개정일	개정 이유	주요 개정사항
	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2. 현행 관광진흥법의 구성

현행 관광진흥법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2장의 관광사업에 관한 부분은 7절로 각 분야별 사업에 관한 개별규제의 방법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관광사업,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의 구조>

장	절	조문별 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 장 관광사업	제 1 절 통 칙	제 3 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 4 조 (등록)
		제 5 조 (허가와 신고)
		제 6 조 (지정)
		제 7 조 (결격사유)
		제 8 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 9 조 (보험가입 등)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제11조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장	절	조문별 내용
	제 2 절 여행업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 (의료관광의 활성화)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 3 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시의 인·허가의 의제 등)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제19조의2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제 4 절 카지노업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 법 등)	
	제27조 (지도와 명령)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 (기금 납부)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장	절	조문별 내용
	제 5 절 유원시설업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 6 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제36조 (폐쇄조치 등)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 7 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 (교육)
		제40조 (자격취소 등)
제 3 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 (정관)
		제43조 (업무)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4 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 (관광통계)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장	절	조문별 내용
제 5 장	제 1 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 (기본계획)
		제51조 (권역계획)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3조 (조사·측량 실시)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준공검사)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준용)
		제61조 (수용 및 사용)
		제63조 (선수금)
		제64조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65조 (강제징수)
		제66조 (이주대책)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장	절	조문별 내용
	제 2 절 관광특구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 6 장 보 칙		제76조 (재정지원)
		제77조 (청문)
		제78조 (보고·검사)
		제79조 (수수료)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 7 장 별 칙		제81조 (별칙)
		제82조 (별칙)
		제83조 (별칙)
		제84조 (별칙)
		제85조 (양별규정)
		제86조 (과태료)

II. 관광기본법 개관

1. 관광기본법의 연혁

(1) 관광진흥법 제정(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77호)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77호로 제정된 관광기본법은 기존의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전략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①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이 시책수행을 위한 국가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 ② 정부는 국회에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 의무, ③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2) 2000년 법률 제6129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75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였던 관광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관광자원의 보호·개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었으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동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41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2007년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이었으므로 관광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현행 관광기본법의 구성

현행 관광기본법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조 명	주요내용
1	목적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2 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번호	조 명	주요내용
2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함
4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5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정부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7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8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 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9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10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11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12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함

번호	조 명	주요내용
13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15	삭제	

제 3 장 관광진흥법 규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제 1 절 관광관련 사업의 발전과 관광진흥법 체계의 부조화

I. 연혁적 관점

관광진흥법은 1976년 관광사업법으로 제정된 이후 1987년 관광기본법과 분법을 거쳐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빈번한 개정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사회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경우 8장 6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관광진흥법은 7장 86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실제 조문의 수는 가지조문 12개조를 포함하면 98개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삭제조문이 4개조에 이르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지만, 관광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복잡성은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입법체계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그 내부에 담겨있는 내용의 변화가 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 제 3 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 3 조
<p>제 3 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여행업 :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 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p>	<p>제 3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07.7.19></p> <p>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p>

1987년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 제 3 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 3 조
<p>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p> <p>2. 관광숙박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p> <p>3.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p> <p>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p> <p>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p>

1987년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 제 3 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 3 조
<p>4. 국제회의용역업 : 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p> <p>5.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p>	<p>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p> <p>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p> <p>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p>

1987년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 제 3 조	현행 관광진흥법 제 3 조
<p>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p>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광관련 산업에 있어서 관광관련 업종의 세분화 및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한 입법체계를 관광진흥법이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이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등을 관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규제형태가 전혀 상이한 개별업을 하나의 법률안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 자체의 비논리성과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의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관광 관련 업종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법체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 체계 내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원시설업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등록은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행정기관에게는 등록을 수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이 없는 영업개시의 규제수단이며, 허가의 경우 영업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록 관광진흥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관광진흥이라는 목적 하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개별 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관광진흥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I. 관광기본법과의 관계

현행 관광기본법의 경우 1975년에 제정된 이후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70년대의 관광환경과 현재의 관광환경의 변화는 크다고 할 것이고 인바 관광기본법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기본법은 종래의 관광사업진흥법 중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된 법이며, 이는 당시 증가하고 있던 관광량에 맞춰 정부의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시책과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다.

통상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법은 그 분야의 정책목표 또는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정책내용으로서 목표·이념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면서 정책 조정기구의 설치와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으면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획에 대한 사항도 규정한다. 따라서 관광기본법이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법제들의 집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체계를 살펴볼 때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관계 설정이 부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선언적인 조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관광진흥법, 한국관광공사법 등 관광관련 법규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서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기본법은 관광행정의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국민들의 건전한 국민관광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광참여에 관한 제도적 보장 즉, 여행안전, 관광정보제공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기본법이 관광정책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광기본법의 경우 관광관련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광발전에 대한 범정부적 역할이 감소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처럼 관광기본법이 관광진흥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입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관광기본법은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고 관광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수행의 기틀로서의 역할이 부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례로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관광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광기본법의 역할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관광진흥법과 관광기본법의 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진흥법인가 규제법인가

I. 서

현행 「관광진흥법」은 제1조에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진흥법으로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흥법인지, 규제법인지, 개발법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을 입법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관광의 진흥에 관한 조문은 제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1년에 이르러서야 가지조문의 형식으로 추가된 조문 5개조를 포함하여 10여개 조문에 불과하다. 그 밖에는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 개발사항을 담고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광진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관광사업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담아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진흥법을 규율대상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법화의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관광을 진흥과 지원의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과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입법의 관점, 기금 등 재정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의 입법체계정비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업종별로 별도의 관광사업화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각 업종별 관련 규율사항을 다루는 입법화방안 역시 관련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분법안

이분법안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관광업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은 현행 법체계에서 관광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진흥과 홍보+관광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분법은 가장 쉽게 분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법체계가 다른 규제법률과 지원·진흥법률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상의 혼란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단기간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분법안의 경우 어떠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적절한지 입법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관광진흥법(안)」의 체계

법안의 목적은 현행 진흥법의 목적인 관광 여건조성과 관광자원개발 등을 통한 관광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칙적 규정으로 관광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보다 강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법률과의 입법체계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기본법」 제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하여 법률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관련 사항을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기본법에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계획으로서의 효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과 관련 개발사업의 방향성과 기관간의 협조, 기금운영의 방향성 등을 포괄적인 국가 관광정책의 관점에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계획을 바탕으로 관광정보의 활용, 관광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한 관광정보 종합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광 관련 인적 자원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답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진흥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관광단체 등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체계와 내용이 구축되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의 단체설립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적·사회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적기구의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전담성을 갖춘 조직체가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수립과 홍보·교육을 위한 ‘한국관광진흥협회’와 같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는 단순한 하부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상호간의 필요를 공통적인 관심사로 도출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계획, 지원, 조직이 갖추어지면, 현존하는 관광자원의 보전·관리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급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관리·개발·보급은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관계라는 점에서 관광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집중 관리와 개발이 필요한 특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발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발이 있고, 특정분야,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특구개발의 방식을 상호 공존적으로 입법체계내에서 담을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관광진흥기본계획 등
제 5 조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
제 6 조 (관광진흥관리계획의 수립과 내용)
제 3 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 7 조 (관광 정보 종합화 사업)
제 8 조 (관광 홍보와 교육)
제 9 조 (관광통계)
제10조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제11조 (관광진흥 전문가 양성)
제12조 (관광진흥과 지역축제)
제 4 장 관광진흥 단체
제13조 (관광진흥 단체의 설립)
제14조 (지역별·업종별 관광진흥 단체의 설립)
제15조 (단체의 구성과 운영)
제 5 장 관광개발과 특구
제16조 (관광지 개발)
제17조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리)
제18조 (관광단지 개발)
제19조 (관광특구개발)
제 6 장 보 칙
제20조 이하 생략

2. 「관광업법」의 체계

현행 「관광진흥법」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법 개편

안이다. 이 경우 사업을 위한 규제체계를 각 업종의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및 관리·감독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즉, 제2장의 통칙규정이 일반적인 사업의 총칙 규정이 되며, 각 절의 개별사업이 관련 사업의 개별적 특성을 담은 업종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삼분법안

삼분법의 경우에는 「관광업법」, 「관광진흥 및 지원법」, 「관광특구개발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법방안은 관광특구를 일반적인 진흥과 지원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방향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방안과 재정을 투입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 사업과 지원·진흥의 체계와는 별도의 개발법의 특성을 가지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며, 개발과 관련된 법률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성과 조직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개별 법률과의 연계성 부족을 탈피하기 위한 기본법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개발법이 별도의 법률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조직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계획간의 연계성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3분법 체계를 갖추는 경우에는 관광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규율하고 있는 「관광기본법」의 입법적 지위를 현재와 같은 선언적 규율에 한정하기보다는 계획과 통할을 중심으로 관광법제의 체계로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체계적 통일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선언적이고 포괄적 요소만을 규율하면서 실질적 집행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계획과 지원체계 및 감

독체계는 물론 각 법률간의 연계성을 공유하면서 종합적 규율이 가능한 입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IV. 개별 분법안

1. 개별 분법안의 방향성

이분법과 삼분법안은 기존의 「관광진흥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입법운영의 편의성과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분법안이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의 대표적 규제사항인 업종 관련 법률은 각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규제와 지원·진흥 등을 하는 것이 입법과 정책의 체계성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원·홍보법과 특구개발법은 별론으로 하고 각 업종별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제의 특성별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방안은 관련 업종과의 연계성이라는 점에서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과 진흥에 있어서 개별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별 입법의 경우 지원과 진흥의 규모 등이 축소될 수 있으며, 각 업종에 따라 규제가 과도한 입법으로 전환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업종별 분법안을 예시하며, 관광업법(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업법, 관광시설업(국제회의법+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법안의 경우 다양한 관광관련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는 수요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각 규율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의 다변화 등에 따른 문제와 국가전체의 관광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체계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업종 분법안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법률안을 다루는 것은 어려우며, 여행업을 중심으로 입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여행업법¹¹⁾ 제정안 검토

현행 「관광진흥법」 제2장제2절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의 가장 대중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통칙의 규제사항과 계약에 관한 일반적 통칙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법률상의 비체계성의 문제와 여행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여행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마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표적인 관광업의 하나인 여행업을 별도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한 사항과 여행업자를 위한 사항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여행에 따른 다양한 입법적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자를 위한 사항은 여행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여행업자는 여행이라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규제제도와 더불어 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과 안전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업의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반여행, 국외여행, 국내여행 등과 같은 포괄적 구분이 아니라 각 여행별 특성이 반영된 보다 다양한 업종과 여행방법에 따른 업종수행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행업의 규제에 관하여는 현재 등록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등록기준 등을 보다 엄격

11) 이 부분은 한국법제연구원, 여행산업 제도개선 연구, 2010.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연구용역보고서의 의견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서식 등 형식적 절차사항을 제외하고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규제에 필요한 결격사유, 영업의 승계,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의무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증의 대여금지, 보험가입의무, 여행수수료의 법정화, 안전정보 제공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자와 여행업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강제적 금지 사유 등도 법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과대광고는 금지하도록 하고, 공정여행의무와 여행지 법령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여 여행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것에 대비하여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에 준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고려하고, 영업소 폐쇄 등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자와 여행업자에 관한 규율은 물론 여행업에 종사하는 여행종사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직업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종사원의 자격시험제도 등도 민간 혹은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력과 훈련된 종사원이 법정화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교육방법 등도 함께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며, 무자격자 또는 자격상실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무자격자 또는 부실자격

자를 퇴출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업에 관한 공정거래의 유지, 여행안전의 확보 및 여행자의 편의증진 도모 등을 위하여 여행산업 종사자가 중심이 되는 여행업 협회 등의 특수법인을 법제화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협회는 교육과 홍보 및 자격에 대한 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사·연구, 통계작성, 위탁사업 등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행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제지원 등의 지원정책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협회의 운영 자금은 각 사업자의 회비 이외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여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업법 제정안(조문목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5 조 (여행업의 등록 등)
제 6 조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 7 조 (여행업의 등록기준)
제 8 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 9 조 (표시제한)
제10조 (여행업의 승계)
제11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 (여행업의 폐업 등)
제13조 (여행업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14조 (보험가입 등)
제15조 (취급수수료 등)
제16조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여행업법 제정안(조문목차)
제17조 (여행계약 등)
제18조 (기획여행의 신고 등)
제19조 (기획여행의 광고)
제20조 (과대광고의 금지)
제21조 (공정여행의무 및 여행지 법령준수의무 등)
제22조 (여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 (과징금의 부과)
제24조 (영업소폐쇄)
제25조 (청문)
제26조 (여행업자 등록부 등의 열람)
제27조 (여행종사원의 선임 등)
제28조 (여행종사원의 자격시험 등)
제29조 (여행종사원의 교육 등)
제30조 (여행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31조 (양성기관의 지정)
제32조 (여행업협회의 설립)
제33조 (정관)
제34조 (여행업협회의 사업 등)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6조 (세계지원 등)
제37조 (여행업의 실태조사 등)
제38조 (수수료)
제39조 (보고·검사)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부 칙

제 3 절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규정

법 제13조는 국외여행인솔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3는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근거를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시로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 실시요령」,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요령」,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이 있다. 국외여행업에 있어서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련 여행업 관련 규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2조는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을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을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교육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경우, 해외여행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등록과 자격에 관한 규제와 교육

등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느슨한 규제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등록과 자격증을 요건으로 법률상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피를 입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의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며, 교육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율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규제될 수밖에 없는 입법정책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솔자의 자격은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15시간을 최소시간으로 하는 교육만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 여행업체 6개월 근무라는 형식적인 기간규정 등의 요건은 법률이 요청하는 엄격한 규제라는 점과는 일치하지 않는 규제의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위임입법의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대략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모든 내용이 고시로 지정되고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배치되고 위임입법의 법리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관고시인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 실시 요령」에서는 소양교육의 구체적 대상,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신청 절차, 지정에 따른 지정서의 교부, 소양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자격인정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법률에 관련 사항의 원칙이나 대강을 규율하고 구체적인 내용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절차적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적 태도라고 판단된다. 교육에 있어서 지정기관 등과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역시 고시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는 입법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법적 태도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제정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제 4 절 위임입법의 정비

I. 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별로 별도의 규제를 담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모두 규율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의 수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변동 사항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부 규정 가운데에는 상위법의 위임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상위법의 규정의 취지를 일탈한 경우,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등이 없는지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제 2 장 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의 종류(제3조제2항)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절차(제4조제1항)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제4조제3항)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변경등록(제4조제4항) •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제5조제2항) • 상호사용의 제한(제10조제2항)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관련 기관(제12조의2제1항) • 외국인 의료관광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2항)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종류(제15조제2항)
---------------	---

제 3 장 관광진흥법 규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제15조제1항) •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제16조제5항제2호)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7조제1항) •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제17조제1항) •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제18조제1항제2호) •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제19조) •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19조의2제1항) •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제20조제1항) •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제20조제4항) •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제20조제5항)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제21조제1항) •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제24조) • 카지노업 종사원의 범위(제28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제2항)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제30조제1항)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영업허가기간 등(제31조제1항) •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제35조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제1항)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37조제2항)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7조) •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제38조제1항) • 시·도지사관할 관광종사원(제40조)
<p>제 3 장 관광사업자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제41조제2항) • 공제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제43조제2항) • 공제사업의 내용(제43조제3항) •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제45조제1항)
<p>제 4 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통계 작성 범위(제46조의2제1항)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제48조의2제3항) • 문화관광축제의 지원방법(제48조의2제3항)

<p>제 5 장 관광지 등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제49조제1항) •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제51조제4항) • 경미한 면적변경(제52조제4항) • 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제52조제5항) •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제54조제1항) •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제54조제1항) •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제55조제3항)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제55조제5항) •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제57조의2제1항) • 인허가등의 의제(제58조제1항) • 준공검사(제58조의2제1항) • 선수금(제63조) • 이용자분담금(제64조제1항) • 원인자부담금(제64조제2항) •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제64조제3항) •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제65조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제66조제1항)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제70조제1항제1호)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제71조) •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제73조제1항) • 건축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제74조제2항)
<p>제 6 장 보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제76조제1항) •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제76조제3항) • 권한의 위탁(제80조제3항) • 등급결정권한의 위탁(제80조제3항)
<p>제 7 장 벌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제86조제1항)

<부령으로 위임한 규정>

<p>제 2 장 관광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법제4조제1항) • 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법제5조제1항)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제5조제2항)
-----------------------	---

제 3 장 관광진흥법 규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제5조제3항) •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제8조제2항) • 보험의 가입(제9조) • 관광사업장의 표지(제10조제1항) • 타인경영금지 관광시설(제11조제1항) • 기획여행의 광고(제12조)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및 자격증발급(제13조) • 여행지의 안전정보(제14조제1항)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제23조제2항) • 조건이행의 신고(제24조제1항) •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제25조제1항)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26조제1항) •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제28조제2항)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제31조) •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제32조)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제33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제32조제2항) •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제1항)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제38조제2항) •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제38조제2항) •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제40조)
<p>제 4 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절차(제48조의6제1항)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기준(제48조의6제2항)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제48조의6제3항)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제48조의8제1항)
<p>제 5 장 관광지 등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제52조제1항)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제52조제1항) • 관광단지개발자(제54조제1항) •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제55조제1항)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제70조제1항)

제 6 장 보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제78조제1항) • 검사공무원의 증표(제78조제4항) • 수수료(제79조)
-----------	--

이상과 같은 위임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상의 위임근거를 기초로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포괄위임적 성격의 법률규정이 다수 있어서 관련 사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관광사업의 종류(법 제3조)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사업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는 법률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와의 관계 등의 문제이다. 법률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제외한 업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법률에 모든 업종을 규율하는 것의 어려움과 다양한 신종 업종의 발생 등을 보다 편리한 입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무분별한 업종의 발생이나 번위확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적으로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법률	개정(안)
제 3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제 3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현행 법률	개정(안)
<p>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p> <p>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p> <p>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업</p> <p>가. 일반여행업</p> <p>나. 국외여행업</p> <p>다. 국내여행업</p> <p>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p> <p>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p> <p>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p> <p>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p>

현행 법률	개정(안)
<p>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p> <p>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p> <p>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p>	<p>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p> <p>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시설업·기획업</p> <p>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p> <p>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p>

현행 법률	개정(안)
<p>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p>	<p>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가. 종합유원시설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p> <p>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라 관광식당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편의시설업</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Ⅲ. 규제체계의 정비

현행 「관광진흥법」을 살펴볼 때, 위임관계와 관련된 규정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있어서 관련 규제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카지노업은 정의는 제3조제1항제5호, 허가는 제5조, 허가요건은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전용

영업장+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중요 사항 변경허가규정을 두면서 허가절차는 시행규칙인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에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제2항은 카지노업을 할 수 있는 주체만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위임입법의 체계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카지노업이 허가업이라는 점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이라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의 형식을 통일하여 허가와 관련된 일관된 입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허가요건과 시설요건이 포괄적 위임입법의 전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체계의 완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최소한의 허가기준과 시설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다음 이 범위에 한정된 업종의 허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의 태도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업의 기준으로서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이라는 기준은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설기준으로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하고 한정된 기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시설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재량일탈의 가능성이 있는 입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	개정(안)
<p>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p>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용영업장</u> 2. <u>외국환 환전소</u> 3. <u>네 종류 이상의 게임기구와 시설</u> 4. <u>카지노 전산시설</u> 5. <u>그 밖에 카지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p>② <u>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법 제25조는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 규정을 바탕으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고시(카지노기구 검사 업무규정)로 정하도록 하면서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의 형식에 있어서 불합리한 방안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격과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별표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공인기준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다. 공인기준에 관한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공인기준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입법사항으로 하면서 그 검사의 기준이 되는 공인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법률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 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카지노기구 도면
 -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시행규칙 제6조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허가절차는 동일한 법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제사항을 포괄적 규제절차가 아니라 각 개별업종별 절차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 제5조에서 전혀 관련 없는 허가와 신고에 관한 절차규정을 통합적으로 별도로 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체계의 혼란으로 법률의 이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업종을 규율하고 있는 각 절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 보다 명확한 규제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체계이며, 통칙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등록규제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은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만을 예시하고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령 제5조는 등록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형식은 등록기준에 관하여 시행령에 모든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적절한 등록기준을 포괄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적 태도로 판단된다.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등록)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제 4 조(등록)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업 : 자본금과 사무실 2. 호텔업 : 숙박시설, 서비스체계를 포함하여 각 종류별 호텔업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광객이용시설업 : 숙박시설, 음식점 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제회의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제회의시설업 :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나.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과 사무실

제4조제1항의 포괄적 등록규제방법 역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이 등록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록기준 등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각 관광사업은 그 개별사업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하며, 개별 규제가 아닌 포괄규제 방식은 규제의 성격별로 분류하는 포괄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규제사항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칙에 규정된 포괄규제사항은 각 사업별로 규제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법률의 규제 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15조는 등록업의 하나인 관광숙박업자 전부와 관광객 이용시설업자 및 국제회의업자 중 전문휴야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을 하는 자는 등록과는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를 인정받으며, 사업의 등록 이후에는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에게는 매우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즉, 계획승인(시장·군수·구청장)→등록(시장·군수·구청장)→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가 주로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번의 중복적인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상 등록이라는 규제를 취하는 것보다 허가규제로 전환하여 허가시 일괄적으로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규제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의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적 태도가 될 수 없다.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도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등록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규제절차와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인허가 의제관련 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허가와 신고규제

허가와 신고는 규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5조는 동일한 규제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규제정책적 관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적 관점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신고규제는 그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지만, 허가규제는 그 허가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관한 규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 규제사항은 개별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별로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이다. 법 제5조는 카지노업의 허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21조에서는 허가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별도 규율하고 있다. 즉, 통칙에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별 업을 규율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규제의 포괄적 판단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p>제 5 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p>
<p>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p>	<p>시행규칙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행사업인 카지노업이 관광진흥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규제와 관리·감독은 별도의 규율체계를 갖추어서 「관광카지노업」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p>법률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1호가목·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p>시행규칙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p>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입법체계상의 관점에서 위임입법에 관한 형식적 체계는 매우 적절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별 규정의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 여전히 행정편의적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에서 규제와 제한규정을 두고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임입법의 실질적 체계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에 관한 사항은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규제적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관련 사항의 기준과 시설 등에 관한 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규제체계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각 규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규제입법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포괄규제와 개별규제가 별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각 규제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함은 물론 개별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가진다는 점에서 규제입법체 전반을 위임입법체계와 연계하여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개발계획법제의 정비

「관광진흥법」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관광개발 기본계획-권역계획-구성계획 등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적 단위를 기초로 체계화한 것으로 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권역계획은 광역단위인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구성계획은 관광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광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지정을 기반으로 관련 입법체계를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기본계획)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3조(조사·측량 실시)
제54조(구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구성계획의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계획은 제49조에서 지역적 차이를 전제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있지만, 양 계획은 어떠한 연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성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계획간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별도의 계획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물론 관광개발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각 하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제하거나 계획간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간간의 차이로 인한 계획연계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조성계획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에게도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한국관광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법인,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계획간의 연계성과 개발에 따른 관리·감독의 권한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성격으로 보아 관광개발에 관련된 행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시·도지사가 거의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역의 난개발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중앙의 종합적인 판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계획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에서는 지정·고시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행규칙에서 시설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등은 물론 관광단지개발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입법의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입법태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부령위임사항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55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경우 허가와 협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계획과 규제가 함께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허가규제의 성격상 허가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조성사업의 시행은 입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협의에 준하는 규제의 정도만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은 허가규제로 정한 입법적 관점과 맞지 않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허가의 기준으로 시행령 제48조제2항이 요구하고 있는 ①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와 ②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등은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며, 엄격하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있는 입법정책에 맞지 않는 입법태도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규제에 적합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지정에 특별한 요건이나 지정의 범위를 지정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조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

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소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입법적 태도이다. 즉, 지정행위는 향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지정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정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지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지정에 대한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입법편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지정의 요건과 필요내용을 법률에서 미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역시 법률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입법적 태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을 제시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지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 계획·권역계획·조성계획과의 연계성이 어떠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적 계획이나 조성계획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신겸, 국제스포츠이벤트와 도시관광 진흥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지역경제학회, 2011.
- 류광훈, 관광진흥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분석, 한국관광학회, 2011.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_____,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_____,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_____,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손대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 통권 제643호, 법제처, 2011.
- 송성인, 관광진흥법의 법적 규제와 육성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5.
- 윤설민, 축제개최 관광지의 매력 평가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문화관광축제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의 상호 비교를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원희·김성진, K-pop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진흥방안, 관광학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2012.
- 이효선, 일본의 지역관광진흥정책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 제49집, 일본어문학회, 2010.
- 장성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진흥정책의 과제, 통일한국 제25권 제1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7.

참 고 문 헌

전희석,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은행, 주요국의 관광진흥정책과 강원 관광산업의 육성방안, 한국은행, 2005.

한국법제연구원, 여행산업제도개선연구(용역보고서), 2010.

부 부

부록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¹⁾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1)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

부 록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수성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추어질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설 등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홀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부 록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 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 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 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부 록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 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 (나)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4) 삭제 <2011.3.30>
-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부 록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부록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규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 제25조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검사(최초 카지노기구 검사)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카지노기구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 검사항목을 검사함을 말한다.

② 갱신검사(유효기간 갱신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카지노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검사함을 말한다. (단, 갱신검사는 유효기간 이내에 실시한다.)

③ 확인검사(봉인 해체가 필요한 경우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주요부의 고장수리, 구조변경, 시상(배당)롤에 영향을 미치는 EPROM 및 프로그램저장장치와 같은 주요부품의 교환, 기타 봉인 해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④ 재검사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서류검사 및 추가검사에 불합격된 기구에 대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1) [시행 2012.3.8] [문화체육관광부규정 제호, 2012.3.8, 폐지제정]

⑤ 서류검사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⑥ 추가검사

서류검사(제11조)를 실시한 결과 본규정 제12조에 2항에 해당되는 검사를 말한다.

⑦ 국가공인검사기관

제조국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검사절차 및 방법

제 3 조 (검사소요 기간) 카지노기구 검사소요기간은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4 조 (검사실시 시간 및 휴일)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휴일은 관공서의 근무시간 및 휴일에 준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검사대상) 검사를 받아야 할 기구는 게임을 목적으로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되는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 게임기(Video Game Machine)로 한다.

제 6 조 (검사신청)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2조제1항, 제3항(해당경우에 한함) 및 제2조 제5항의 경우에는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신규검사 신청(카지노 사업자)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2.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자명·제조년월일·제조번호·규격·형식 또는 모델명이 기재된 것) 1부.
 3. 카지노기구 수입 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 카지노기구 구조도 및 설치도면(현장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각1부.
 5. 카지노기구 동작설명서 1부.
 6. 카지노기구 시상(배당)율 표 및 그림의 구성표 각 1부.
 7. 카지노기구의 사진[전면 및 생산일련번호(Serial No)] 2장.
 8. 모델별 이론적 배당률 표 산출근거 1부.
 9.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② 갱신검사 신청(신규검사를 받은 카지노사업자가 검사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카지노기구를 검사 신청하는 경우)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 ③ 확인검사 신청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2. 확인 할 내용 및 설명서 1부.
-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신규검사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재검사 신청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2.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⑤ 서류검사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
 2. 별지 8호 서식의 EPROM,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등록 신청서 1부.
 3.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면장

부 록

5. 카지노기구 구조도 및 설치도면 각1부.
6. 카지노기구의 사진[전면 및 생산일련번호(Serial No)] 2장
7. 카지노기구 시상(배당)율 표 및 그림의 구성표 각 1부.
8. 모델별 이론적 배당률 표 산출근거 1부.
9.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⑥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 등록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를 검사신청할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동일모델별로 각각 1개의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와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 체커(Checker)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카지노사업자는 연구원에 등록된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를 교체할 수 없다.

제 7 조 (검사장소) 검사는 연구원내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출장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카지노사업자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 9 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 ②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 ③ 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 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 ② 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 ③ 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 ① 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 ② 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수수료

제13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1대(1개)를 기본단위로 계산한다.

- ② 원장은 수수료율 표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출장비는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납부하며 당원 여비규정(3급기준)에 따른다.
- ④ 검사수수료는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신규검사, 갱신검사 : 대당 189,000원
 2. 확인검사 : 기본료(100,000원)+25,000원(1대 기준)
 3. 추가검사 : 별표 2에 따르되 대당 18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 (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수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납부한다.
③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수수료 환불) 검사 착수 전에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 및 출장비는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신청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독촉장을 발송하고 발송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도 검사 또는 환불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검사의 증명

제16조 (합격증명서) 공인검사기준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 기구는 개개의 제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불합격한 제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7조 (합격필증) 공인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 기구는 개개의 제품에 별지 제5호서식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한다.

제18조 (봉인 등) ① 공인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 기구에 대하여 변조할 우려가 있는 주요부분은 다음 방법에 따라 확실하게 봉인하여야 한다.

1.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 : 스티커 또는 압착봉인
 2. EPROM 및 기타프로그램저장장치가 들어있는 PCB 기판 및 외함 커버 : 스티커 또는 압착봉인
 3. 기타 변조가 우려되는 부분 : 스티커 또는 압착봉인
- ② 고장시 수리 등을 이유로 봉인한 부분을 개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에 이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연구원은 영업

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유효기간) 합격증명서 및 합격필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 (대장) 검사기관은 카지노기구 검사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보고) 검사기관은 검사실적이 있는 경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류의 보존기간) 카지노기구 검사 관계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은 5년으로 한다.

제23조 (업무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기구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상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검사원의 준수사항) ① 검사업무 수행시 원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기득한 기밀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검업소에 불편이나 부당한 일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지시를 받은 검사원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사의 거부, 방치 및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불법 변조된 기구를 발견하였거나 기타 위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카지노관광협회 회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9999호, 2012.3.8>

1.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 기존 카지노기구검사 업무규정(2008.07.31 승인)은 폐지한다.

부록3 카지노업 영업 준칙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28조·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 [시행 2012.3.2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2012.3.29, 일부개정]

6. “뱅크롤”이라 함은 영업준비금을 말한다.
7. “베팅금액한도표”라 함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8.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
9.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0.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1.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12.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3.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4. “칩스교환대”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15. “셔플기”라 함은 카드를 섞을 때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16. “터미널”이라 함은 E-Table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17. “하이브리드 전자 게임”이라 함은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게임을 말한다.
18.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영업시설

제 4 조 (전산시설 설치기준등) 카지노전산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의한다.

제 5 조 (출납창구의 설치기준) 출납창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납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등) ①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카운트룸 설치기준) 카운트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문은 1개이어야 한다.
2.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추어야 한다.
4. 계산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CCTV의 녹화)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면을 녹화하여야 한다.

부 록

1. 카지노 영업장에 출입장면
 2. 환전(재환전) 및 출납장면
 3. 테이블에서 행해지는 게임장면
 4. 카운트룸에서 행해지는 계산장면
 5. 기타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행위
- ② CCTV 녹화물은 촬영장소에 따라 관리번호(월·일·시간 표기)를 부여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카운트룸의 계산장면 : 녹화한 날부터 20일 이상
 2. 기타 장면 : 녹화한 날부터 6일 이상
- ③ 카지노사업자는 CCTV설비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CCTV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문에 통제구역 표시를 붙여야 한다.

1. 카운트룸
 2. 모니터룸
- ② 통제구역에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제구역출입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출입자이름
 2. 출입일시
 3. 출입사유
- ③ 제2항의 허가받은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카운트룸 : 계산요원
 2. 모니터룸 : CCTV시설 담당부서 직원

제10조 (시설관리) 카지노사업자는 이 준칙에서 정한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임기구

제11조 (게임기구의 종류등) ①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게임기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진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게임기구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조게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게임기구의 관리)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게임기구현황표를 작성하고 게임기구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칩스의 규격 및 관리등) ① 칩스는 정액칩스와 비정액칩스로 구분한다.

② 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숫자 또는 색깔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위조칩스의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예비칩스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⑤ 카지노사업자는 칩스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게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칩스는 사업장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 (테이블의 규격) 게임테이블은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한도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룰렛휠의 규격) ① 룰렛휠의 규격은 직경 7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의 2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의 볼 낙착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 (빅휠의 규격) ① 빅휠의 직경은 1,5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빅휠의 둘레는 균등한 간격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간격의 수는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간격사이에 들어갈 그림 혹은 숫자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제17조 (주사위 흔들개의 규격) 빠이까우 게임시 참가자의 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사위흔들개는 카지노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카드의 규격 및 관리) ①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

② 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내의 지정된 장소에 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흠집 등 카드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 (룰렛볼의 규격) ① 룰렛볼의 규격은 직경이 16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볼의 재질은 비금속성이어야 한다.

제20조 (주사위의 규격) ① 주사위의 규격은 주사위 눈의 식별이 가능한 크기 이어야 한다.

② 주사위 각면의 눈의 숫자는 1과6, 2와5, 3과4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③ 주사위의 면과 면사이는 90°를 이루어야 하며, 각면의 무게가 일정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영업절차

제21조 (고객출입관리) ① 카지노 영업장에는 내국인(해외이주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 및 19세미만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여행사직원과 방문객은 방문증을 패용케 한 후 출입시킬 수 있으나 게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 출입구에는 “내국인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모든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다음 각호의 신분 증명서를 각인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1. 여권, PT여권(여행증명서)
2. 외교관 신분증, 미군 ID카드,
3. 영주자격이 확인되는 재외국민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시민권 또는 영주권카드
4. 외국인임이 입증되는 국제운전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선원증).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가. 동반한 여행사직원이 고객명단을 제출한 단체입장객의 경우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객관리대장 및 고객관리용 전산장치에 등재되어 있는 단골고객의 경우

- ④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장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 1. 무기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자
 - 3. 카지노에서 불법행위나 소란행위 등으로 영업장운영을 방해한 경력이 있는 자
 - 4. 폭력·만취·고성방가·정신장애·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
 - 6. 카드카운터 등 전문도박인으로 인정되는 자
- ⑥ 카지노사업자는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월 카지노사업자에게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카지노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 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지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환전) ① 카지노 환전영업소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 등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환전영업소에서의 환율적용 및 행정절차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23조 (게임규칙)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개별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게임의 진행) ①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참가자가 1명이라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모든 게임에서 베팅과 지불은 카지노사업자가 인정하는 칩스(전자칩스를 포함한다)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표로 칩스를 교환코자 하는 게임참가자에게 카지노사업자는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가능한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 (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분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 (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등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 ② 출납에서는 칩스교환요구 고객의 게임참가 및 크레딧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현금교환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③ 재환전시 행정절차와 장표관리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다.

제27조 (드롭박스의 기준등) 드롭박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테이블에 부착시키는 잠금장치는 드롭박스 자체의 잠금장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2. 현금, 수표, 유가증권 및 전표 등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3.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임유형별 테이블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8조 (드롭박스의 열쇠관리등) ① 테이블에서 드롭박스를 제거하는 열쇠는 회계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드롭박스 개봉열쇠는 계산요원만이 취급할 수 있다.
- ③ 드롭박스 제거열쇠와 드롭박스 개봉열쇠를 동일인이 관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드롭박스의 계산절차) ① 드롭박스 계산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드롭박스의 계산은 카운트룸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③ 계산에는 최소한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1명은 화폐 등의 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1명은 집계표를 작성하며, 나머지 1명은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 ④ 드롭박스를 개봉하면 투명한 테이블에 내용물을 쏟아 내용물의 잔류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시킨 다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⑤ 각 테이블별로 작성된 드롭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집계표를 작성하고 계산에 참여한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계산내용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 장 머신게임

제30조 (머신게임 시설기준) ①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영업활동과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잔돈교환소
2. 중앙금고
3. 코인(토큰)카운트(포장)실
4. CCTV시설

② 제1항의 시설중 제1호의 시설은 출납창구와, 제2호의 시설은 테이블 게임 칩스뱅크(chips bank)와, 제3호의 시설은 테이블게임 카운트룸(count room)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잔돈교환소의 설치기준등) ① 잔돈교환소는 고객의 이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 록

1. 윗면이 개봉된 부스형이어야 하고 밀폐된 면의 상단부는 투명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봉된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지폐, 코인(토큰), 문서 등의 교환장면은 녹화할 수 있도록 CCTV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잔돈교환소의 책임하에 이동식 잔돈교환원, 잔돈교환머신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CCTV시설) 제30조제1항제4호의 CCTV시설은 다음 각호의 장면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머신게임기구(이하 “머신기구”라 한다) 주도어 개폐장면
2. 코인(토큰)·지폐 등의 드롭 및 호퍼(hopper)에 코인(토큰)을 넣는 장면
3. 기타 머신게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장면

제33조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머신기구는 다음 각호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당금액표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머신기구 내부 또는 외부에 명시되어야 한다.
2. 머신기구의 전면에는 항상 다음 각목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가. 투입된 코인(토큰)수
 - 나. 고객이 이겼을 때 지불된 코인(토큰)수
 - 다. 남아있는 코인(토큰)
3.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이론적 배당률이 반드시 75% 이상이어야 한다.

4. 매 게임의 결과는 무작위 선택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운영테스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할 때 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5. 배당률 조작을 위한 배당금액표 자동전환장치가 부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전기, 외부의 자기방해, 전기방해, 무선주파수 등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하고, 전원공급장치는 휴즈나 회로차단기로 보호되어야 한다.
7. 투입, 지불, 드롭(drop)을 기록할 수 있는 미터기를 포함한 최소 3개 이상의 미터기를 장착하여 6자리 이상까지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8. 투입미터기는 머신기구에 투입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지불미터기는 머신기구를 통해 고객에게 지불된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드롭미터기는 드롭 박스에 떨어진 코인(토큰) 등을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미터기는 정전에 대비하여 자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코인(토큰) 또는 지폐접수기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것만 받아들여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1. 이피롬(Eprom)은 주요한 회계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카지노 사업자가 최저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12. 머신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회로보드는 이를 보호할 커버가 있어야 하고, 회로보드커버에 잠금장치(봉인)가 되어 있어야 한다.

13. 호퍼의 고장, 지불코인(토큰)의 소진, 릴스핀 에러(reel spin error) 등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작동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머신기구상에 명확하게 그 사실이 표기되어야 한다.
14. 머신기구상단부에 최소 2단계 이상의 경보용 등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되, 1단계는 주도어가 열렸거나 드롭박스가 열리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경보등이 점멸되어야 하며, 2단계는 고객이 코인(토큰)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5.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호, 모델번호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머신기구의 설치등) ① 머신기구는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이외에서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머신기구의 철거) ① 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장내에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각각의 머신기구에 대한 철거당시의 호퍼, 드롭박스 등에 있는 금액과 투입, 지불 및 드롭미터기의 수치를 별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피롬의 관리)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사기관에 머신기구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머신기구의 모델별로 각각 1개의 이피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검사기관에 등록된 이피롬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중인 이피롬을 교체할 수 없다.

제37조 (영업일지 기록) ① 머신기구의 주도어를 연 때에는 반드시 전산 장치 또는 머신 영업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일시
2. 사유
3. 조치결과
4. 직원의 성명 및 서명

제38조 (배당율 점검) 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출납부서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기계에 내장된 미터기 등을 판독하여 이론적배당률과 실제배당률의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가 5%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산확인절차) 계산확인절차는 계산이 종료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잭팟·필지볼티켓 원본과 사본의 모든 내용과 서명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잭팟·필지볼티켓의 합계가 드롭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3. 계산금액에 오기가 없는지 및 화폐금액으로의 환산이 정확한지 여부
4. 미터기에 의해 판독한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 등

제40조 (중앙금고의 관리) ① 중앙금고는 금고회계원의 책임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든 거래는 일일금고잔고보고서에 매 교대조별로 요약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 (머신게임의 매출액) 머신게임의 매출액이라 함은 고객이 머신기구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머신기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지불된 총금액 및 머신기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테이블게임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총매출액 산정방법 등) ①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을 함께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한 총매출액 산정은 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을 함께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을 보고할 때에는 테이블게임 매출액과 머신게임 매출액의 내역을 각각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 구축 등) ①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계산관련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액 자동확인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기록은 리세팅이 불가능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일매출액 및 누적매출액의 출력이 즉시 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 (머신기구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의 대표자, 임원, 주주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머신기구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5조 (머신기구의 검사) 카지노영업장에 머신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3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머신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구설치도면
3. 기타 머신기구 검사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 6 장 회계제도

제46조 (회계년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를 위한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7조 (회계기준)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의 수입 및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 (회계기록) 회계기록은 복식부기에 의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카지노수입금, 카지노손실금에 관한 사항
2. 크레딧 관련 사항
3. 기타 영업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단,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는 경우 바우처, 티켓 등 제반 증빙서류는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 (외부감사) 카지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단, 프리칩스쿠폰 및 프리칩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 ④ 매출액은 일일단위로 결산하여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출액 현황에 이를 카지노수입금으로 표기처리하고,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 카지노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지노손실금으로 표기처리하여야 한다.
- ⑤ 계약게임과 관련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제 3항의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한다. (단, 전문모집인이 내국인일 경우 계약게임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대손처리) 카지노고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와 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제52조 (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 3. 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 4.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기프트 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할 경우

제53조 (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박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54조 (크레딧 제공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부분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 (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 (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부분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부분은 크레딧발행부서에서 보관한다.

제57조 (계약게임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 계약게임 관계가 성립되면 게임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약게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일자
2. 전문모집인 성명
3. 고객수
4. 고객의 국적
5. 지불금액

제58조 (보고) 카지노사업자는 제21조의 입장객현황, 제42조 및 제50조의 매출액현황, 제54조의 크레딧내역서 및 제57조의 계약게임내역서를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카지노 종사원의 준수사항

제59조 (게임규칙준수) 카지노종사원은 이 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 (종사원의 품위유지) ① 카지노종사원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지노종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업 영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제61조 (종사원의 교육) 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은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3호, 2012.3.29>

제 1 조 (시행일) 이 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카지노 검사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준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 규칙 제33조제3항 및 종전 카지노업영업세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9호, 2002.7.15)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준칙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록4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이하 “소양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양교육의 대상)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여행인솔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 의한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교육기관의 지정)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을 위한 소양교육기관(이하 “소양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단, 사내교육기관은 제외)

제 4 조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양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 2010.7.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24호, 2010.7.1, 일부개정]

부 록

1.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과정, 정원수, 교과내용, 수업시간 수 및 출석·평가관리 등을 포함한 소양교육과정
3.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4. 강의실 현황

제 5 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양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소양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양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① 국외여행인솔자의 소양교육기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교육기간은 각 소양교육기관에서 정한다.

②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령 등
2. 여행서비스, 국제예절, 항공실무 등
3. 국외여행인솔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4. 기초 영어회화 등

제 7 조 (자격인정증의 교부 등) ①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소양교육기관은 당해 소양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이하 “자격인정증”이라 한다) 교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인정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인정증을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인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인정증 재교부 신청서(이하 “재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을 이수한 소양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소양교육기관은 자격인정증 재교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양교육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소양교육기관에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24호, 2010.7.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에 의해 소양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소양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록5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 관한요령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

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관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3 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원격대학 제외)
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단, 원격대학형태 제외)

1) [시행 2011.10.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7호, 2011.10.18, 일부개정]

제 4 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기관 개황
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
4. 교육시설 현황
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 5 조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7 조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 8 조 (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
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4.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5.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제 9 조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 건전한 국외여행환경 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7호, 2011.10.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 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